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28 발의연월일: 2022. 6. 17.

발 의 자:김상훈·유상범·임병헌

강대식 • 한무경 • 김예지

이종성 • 태영호 • 김승수

유경준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어르신,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, 비과세 등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최근 코로나-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,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	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
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생 략)	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	2
용근로자는 제외한다)로서	
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	
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	
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	
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	
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<u>2022년</u>	<u>2025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해당 과세기간	12월 31일
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청	
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	
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, 제	
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	
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	
해당한다)의 100분의 40에 상	
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	
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	
다만,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	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	
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	
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	

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
### ③ ~ ① (생 략)

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(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 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)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비과 세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2022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 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.

③ ~ ⑪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
한 과세특례) ①
<u>2025</u>
<u>년 12월 31일</u>